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4. 22(화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4. 4. .

나. 제 안 자 : 조 영 홍 의원

다. 회부일자 : 2014. 4. .

라. 상정일자 : 2014. 4. 22.(제21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위원회)

○ 제안설명 : 조 영 홍 의원

○ 검토보고 :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임 헌 기

○ 질의 및 토론

○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상위법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○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였던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을 금지 물건에서 삭제하고 조문 일부를 수정 함(안 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상위법인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이 2014년1월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인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물건에서 횡단보도 안전표시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없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이도형, 이재병, 김병철, 정수영 의원

나. 반 대 : 없 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: 4명, 찬성 : 4명)

7. 기타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: 1.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11조제9호”를 “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교통안전시설물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) 영 제11조제9호에 따라 추가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6조(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) 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----------.
1.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등 교통안전시설물	1. 교통안전시설물
2. ~ 7. (생 략)	2. ~ 7. (현행과 같음)